 국토교통부	<h1>보 도 자 료</h1>	<small>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</small> 보다나은 정부
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입니다	배포일시	2018. 7. 24(화) / 총3매(본문2매)
담당 부서	자동차정책과	담당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박대순, 사무관 유연형, 주무관 황우관 • ☎ (044) 201-3843, 3844
보 도 일 시	2018년 7월 25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7.25.(수) 06:00 이후 보도 가능	

현대, 캐딜락 리콜 실시 (총 2개 차종 2,833대)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2개 업체에서 제작 또는 수입하여 판매한 자동차 총 2개 차종 2,833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(리콜)한다고 밝혔다.
- 현대자동차(주)에서 제작하여 판매한 쏘나타(LF) 1,604대는 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의 프로그램 오류로 동승자석에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더라도 성인이 탑승한 것으로 잘못 인식하여 사고 발생 시 에어백이 전개되어 탑승한 유아가 다칠 가능성이 확인되었다.
 - 해당차량은 7월 27일부터 현대자동차(주)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프로그램 업데이트)를 받을 수 있다.
- 지엠코리아(주)에서 수입하여 판매한 캐딜락 CT6 1,229대는 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가 규정 지름(6mm)을 초과하여 자동차 안전기준*을 위반하였으며, 국토교통부는 지엠코리아(주)에 해당 자동차 매출액의 1천분의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.
 - * UN ECE R14 : 유아용 카시트를 장착하는 하부 고정장치(ISOFIX)의 수평막대는 동일한 축에 위치한 두 개의 막대에 6mm를 기준으로 ±0.1mm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
 - 해당차량은 7월 25일부터 지엠코리아(주)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(점검 후 수리)를 받을 수 있다.

□ 이번 리콜과 관련하여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,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*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.

* 자동차제작자들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2에 따라 결함 사실을 공개하기 전 1년이 되는 날과 결함조사를 시작한 날 중 빠른 날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(자동차 소유자였던 자로서 소유 기간 중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를 포함한다) 및 결함 사실을 공개한 이후에 그 결함을 시정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체 시정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함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은 현대자동차(주)(080-600-6000), 지엠코리아(주)(080-3000-5000)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.

□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·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(www.car.go.kr, 080-357-2500)를 운영하고 있으며,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.



※ <참고1> 리콜 대상 자동차

제작사	차명(형식)	결함장치	제작일자	대상대수
현대자동차(주)	쏘나타(LF)	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	'18.03.14.~'18.06.22.	1,604
	소 계			1,604
지엠코리아(주)	캐딜락 CT6	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(하부)	'15.12.09.~'17.09.21.	1,229
	소 계			1,229
총 계				2,833

※ <참고 2>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

현대자동차(주)	
	
쏘나타(LF)	동승자석 승객감지장치
지엠코리아(주)	
	
캐딜락 CT6	뒷좌석 유아용 카시트 고정 장치(하부)

*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실제 자동차와 다를 수 있음

 	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유연형 사무관 (☎ 044-201-3843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--	--